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 협력적인 관계가 강화되도록 시·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‘보고’하도록 하던 것을 ‘통보’하도록 용어를 정비하고, 재검토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

2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11조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- 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국토교통부훈령 제1841호

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

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0조제1항 중 “보고”를 “통보”로 한다.

제42조 중 “2022년 1월 1일”을 “2025년 1월 1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0조(입지시설의 사후관리) ① 관할 시·도지사는 매년 1월말 까지 입지승인시설의 전년도 추진 상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<u>보고</u> 하여야 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제42조(재검토기한) 국토교통부장 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「훈령 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</p>	<p>제40조(입지시설의 사후관리) ① ----- ----- ----- <u>통보</u> -----.</p> <p>② (생략)</p> <p>제42조(재검토기한) ----- ----- ----- 2025년 1월 1일 - ----- ----- -----.</p>